의안번호	제 89 호	
의 결	2023. 9	
년 월 일	(제 307 회)	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

제 출 자	금 산 군 수
제출년월일	2023. 9. 4.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

의안번호 제 89 호

제출년월일 : 2023. 9. 4. 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특별재난지역 선포(2023.7.19.)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하여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

- 1)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
- 2)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)

나. 세목별 감면내역

1) 주민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[개인분, 사업소분 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]을 면제

2)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
- 3) 재산세(「지방세법」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)
 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

다. 기타

- 1)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
- 2)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등【붙임】

- 1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 제4항(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)
- 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조 제5항(지방세 감면규모 등)
- 3)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여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

금산군수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(2023.7.19.)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금산군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감면대상자

- 1)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"사망자"라 함)
- 2)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, 이하 "유가족"이라 함)

2. 세목별 감면내역

가. 주민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[개인분, 사업소분 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]를 면제한다.

나.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다. 재산세(「지방세법」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)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3. 기타

- 가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나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- 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,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,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- 1.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(지방세 감면율·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·적용 대상자·세목·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)하는 지방세 감면
- 2. 「지방세법」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
- 3. 「지방세법」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
- 4.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
- 5.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제147조에 따른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・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</u>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-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"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-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-사망자·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

2023. 7.



「호우 피해」 "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"에 따른 사망자·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

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, 범정부 차원에서 全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

① 추진 배경

○ '23. 7. 9.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**13개 지자체***가 **"특별재난지역"**으로 **우선 선포**('23.7.19.)

<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>

구분	시군구 단위	읍면동 단위	
세종	세종시	-	
충북	청주시·괴산군	-	
충남	논산시·공주시·청양군·부여군	-	
전북	익산시	김제시 죽산면	
경북	예천군·봉화군·영주시·문경시	-	

- 해당 천재지변으로 **사망한** 자,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
- □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

②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

● 지원 근거 및 방식

○ (법규정) 재난·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§4④)

- (지원방식)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※ '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
- **직권 감면을 원칙***으로 하되,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**신 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** *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

2 감면 대상자

-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"사망자"라 함)
-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, 이하 "유가족"이라 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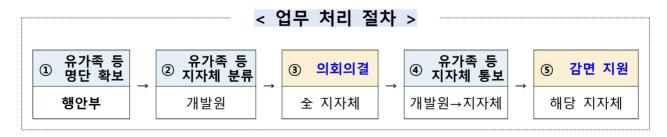
❸ 감면 내용

- 사망자·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¹⁾,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²⁾
 - ┌ 1)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(2023.1.1.~12.31.)의 지방세
 - └ 2)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<u>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</u>

	세 목 부과대상		납기	소관 지자체
	주민세가인분* ・사망자·유가족(개인, 개인사업자) 8월 자동차세소유분 ・사망자·유가족소유자동차 6월, 12월		8월	특·광역시, 시·군
1			6월, 12월	특·광역시, 시·군
	재 산 세	• 사망자·유가족 소유 토지·주택 등	- 01	시·군·구
2	지역자원 시 설 세*	• 사망자·유가족 * 소방분 限	7월, 9월	특·광역시, 도
3	취 득 세	•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	특·광역시, 도

- ② **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**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🖒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
-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**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**으로 취득하는 경우 수 취득세

③ 협조사항



- (개발원) 사망자·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旣부과·부과예정 **납세지 관** 할 지자체^{*}에 대상자 내역 통보
 - * (정기분)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·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(취득세)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

- (지자체)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'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
 - * ,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
 - *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旣부과된 지방세는 감액·환급 조치
 - ⇒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
 - ※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